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

(정준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66 발 의 년 월 일: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:정준호, 강동길, 경기문,

과향기, 김기덕, 김성준, 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박영한, 박칠성, 서준오, 유정인, 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 이종태, 임종국, 최민규, 최재란, 홍국표 의원(24명)

1. 제안이유

-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종 차별에 대한 예방차원의 규 정이 필요한 실정임.
- 이를 위해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다름을 인정 한 지역사회의 포용과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 속에서 도시경쟁력이 높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, 서울시가 인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리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인종차별 방지와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 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, 적용범위, 기본계획의 수립 등, 실태조사, 인종차별 방지, 위원회의 설치, 위원회의 구성, 위원회 운영 등,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~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모든 형태의 인 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」, 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인종차별"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·구별·제한·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 시의 정책 등을 조사·연구하여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평등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·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.
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인종차별 예방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- 2.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
- 3. 인종차별 예방 정책의 분석 · 평가에 관한 사항
- 4.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법·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인종차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인종차별 방지) ① 시장은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영역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.
 - 1. 현존하는 인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인종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
 - 2. 법령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- 3. 그 밖에 인종차별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
 - ③ 시장은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자치구, 민간기업 등에 권고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종 차별 예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·분석
- 2.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
- 3. 그 밖에 인종차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종차별 예방 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위촉된 위원으로 하되, 외국인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종차별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 -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인종차별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제11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교육 및 홍보)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2101200000006

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정준호 의원

담 당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

접 수 일: 2022.10.12.

회 신일: 2022.10.12.

내용문의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7조의 인종차별 현황 실태 조사 및 10조의 인종차별 예방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비용 발생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≒159,800천원(연평균 31,960천원)
 - 추계의 전제
 - 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 인종차별예방위원회의 인원을 13명인 것으로 하되 이 중 위촉직 위원은 9명으로 함.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
 - 제12조(교육 및 홍보) 및 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관련 비용은 서울시인권담당관과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지 않으며, 제7조의 인종차별 현황 실태조사 비용을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함
 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≒ 159,800천원(연평균 31,96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합계
세입	-	-	-		-	-0	
	소계(a)	==	-	58		-	
세출	실태조사비(안 제7조)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서울시 인종차별예방위원회 총운영비(안 제10조)	6,960	6,960	6,960	6,960	6,960	34,800
	소계(b)	31,960	31,960	31,960	31,960	31,960	159,800
	총비용(b-a)		31,960	31,960	31,960	31,960	159,800

- 서울시 총 인종차별예방위원회 운영비 ≒ 34,800천원
 - 산출방식 : 연간(2023~2027) 비용의 합산 : 6,960천원×5년
 - 연간 위원회 운영비 ≒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 ≒ 5,400천원 + 1,560천원



⇒ 6,960천원

•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= 위촉직 위원 수 $\times 1$ 인당 회의참석 수당 \times 1년간 회의개최 횟수 = 9명 \times $150,000원 <math>\times$ 4회

= 5,400천원

- 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
-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\times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\times 1년간 회의개최 횟수 = 13명 \times 30,000원 \times 4회

= 1,560천원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○ 인종차별실태조사비 ≒ 125,000천원

- 산출방식 : 연간(2023~2027) 비용의 합산 : 25,000천원×5년

- 인종차별 실태조사비: 25,000천원

담당 부서명	통계목명	사업명
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	사무관리비	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

※ 인종차별 예방 조사 및 연구 용역비는 유사사업인 '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' 용역비로 추산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류동균

28 02-2180-7952

e-mail: rooster72@seoul.go.kr